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0 선고 2018가단5198939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박기웅

피고B조합

피고보조참가인회생법인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권기중

변론 종결2019. 5. 13.

판결 선고2019.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2019. 6.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5. 11.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대전 E공사를 공사대금 '469억 6,4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인 2015. 12. 2.부터 28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그 계약 상 보증금을 공사대금의 10%에 해당되는 46억 9,640만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계약보증금, 계약해제 내지 해지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계약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C을 각 의미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납부에 갈음하여 계약체결 후 14일까지 다음의 보증서 등(이하 '계약보증서'라 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B조합, F조합, G조합, H조합법에 의한 H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갑'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거나, 계약보증서의 보증범위 감축에 동의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는 '갑'에게 귀속된다. (후략)

제37조('갑'에 의한 계약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6. '을'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경우

7. '을'에 대한 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등으로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9. '을'이 부도처리되거나 파산한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1) C은, 원고에게 지급할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2016. 1. 29. 피고와 보증금액 46억 9,640만원, 보증기간 2015. 11. 18.부터 2018. 4. 1.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주계약의 해지)

보증채권자는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1) 원고는 2017. 1. 18. C에게, '2017. 1. 17.자로 C의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2017. 1. 25.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그런데 C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2017. 1. 25. 다시 C에게, '2017. 1. 25. 현재까지

계약해지사유(부도처리 등)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바, 2017. 2. 1.까지 이 사건 공사 해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할 예정이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2. 1.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37조에 따라 해지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계약 제1조,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계약보증금 46억 9,6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보증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는데, 그 계약보증금 약정경위,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됨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8478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에다가 을 제1, 2호증, 을나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은 과다하여 43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은 지하 4층, 지상 25층의 연면적 39,205,400㎡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총 공사대금이 469억 6,400만 원으로 정해졌다가, 2016. 9월경 지하 4층, 지상 21층의 연면적 35,899,400㎡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되어 그 공사대금 또한 430억 400만 원으로 약 40억 원 가량 감액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보증서의 보증범위 감축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바, 만일 C이 그러한 계약보증서의 보증범위 감축을 요청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거절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도급인 및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정 금액의 선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거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내지 수급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할 수 있으며(제34조 제1항), 공사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거나,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도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선금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며(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 제8조, 제9조), 위 표준계약서에 정해진 사유 이외에도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나 더 추가하고 있는 반면(제37조 제1항), 수급인인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가지만 인정하고 있는 등(제38조 제1항), 수급인인

C에게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내용이 많다.

이러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계약상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C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일인 2017.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0.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상민